

파주병원복합 경기행복주택

[동호추첨 선계약 후검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모집 공고일: 2021. 5. 31.]

금회 모집은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등기우편**으로만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선계약 대상자 및 동호지정 전산추첨 진행 후, 지정된 날짜(시간)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고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를 하는 방식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본 경기행복주택의 모집공고의 **참여 신청은 등기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은 계약서 작성기간으로부터 약 3달 소요 예정 이며, 계약자에 한하여 입주지정기간 별도 안내합니다.

문의: 02)589-4754 (동원건설산업 임대운영관리) 평일 10:00-17:00 운영

1. 입주자 모집내용 요약 및 유의사항

※ 아래 내용은 요약사항이므로 본문의 세부 자격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상주택

구분	건설위치	모집호수	건물층수	입주
파주병원복합 경기행복주택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90	3호(예비자20)	6층	계약 검증후 1개월

■ 입주자격 요약(공급대상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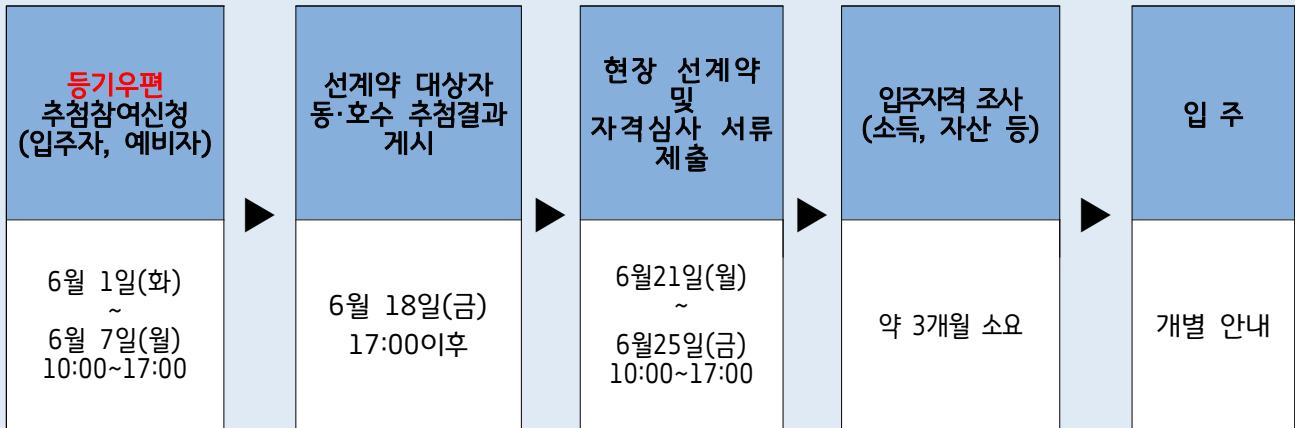
- 본 경기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5.31.)을 기준으로 해당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에게 공급됩니다.
- 공급대상자에 따라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본문의 세부 임대조건, 자격, 청약절차 기타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입주자격(요약안내)
대학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공고일 기준)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만19세-만39세가 아닌 사람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고령자	-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격 요약(요건별)

구분	소득	자산	차량가액	주택청약저축
대학생	월평균소득 100%이하	(본인) 7,200만원 이하	소유금지	-
청년	월평균소득 100%이하	(해당 세대) 25,400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가입필요
고령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해당 세대) 29,200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

■ 입주자 선정절차 (동호추첨 선계약 후검증)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모집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명시할 예정이오니 접수 이후에도 수시로 모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장선계약은 지정된 시간에 방문하여 계약관련 서류 작성 및 자격 서류제출
- ※ 전화문의 : 02-589-4754(동원건설산업 임대운영관리 담당)

■ 유의사항

- 선계약 후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인 경우만 계약은 유효하고 입주가 가능하며, 검증완료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입주 전 변경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부적격자는 계약해지(해제) 통보 없이 입주 적격자 발표 후 신청 계좌로 계약금만을 반환(이자지급 없이 약10일 전후 지급)하고 계약은 해제 됩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 번심 등에 의한 계약 해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는 계약(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 모집대상 주택은 입주자격 조사완료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적격자 안내일로부터 1개월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적격자 안내일이 주택의 사용가능일 1개월 이전인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당첨자로 확정된 분은 입주 후 주소지를 반드시 해당 주택 소재지로 주소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휴대폰 번호 또는 주소가 신청서와 달리 변동된 분은 정정신청을 하여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행위 등은 임대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 경기행복주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해당세대 전원의 소득자산 등을 확인합니다.
- 행복주택은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신청자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대상

단지구분	공급형		공급대상	입주자	예비자	세대 당 계약면적(㎡)				합계	최대 거주기간	입주 예정
	주택 구분	공급 구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파주병원복합	26A	26A	대학생	-	5	26.79	18.82	10.20	-	55.81	6년	추후통보 ※자격심사완료 후 1개월
		26A1	청년	1	5						6년	
	35A 35B	35A1B1	청년	1	5	35.23	24.39	13.42	-	73.04	6년	
						35.02	24.48	13.34	-	72.83		
	35A 35B	35AB	고령자	1	5	35.23	24.39	13.42	-	73.04	20년	
						35.02	24.48	13.34	-	72.83		

■ 임대조건

단지구분	공급형 (주택구분)	공급대상	임대조건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증감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파주병원복합	26A	대학생		20,349	1,000	19,349	117,000	(+)	30,349	66,000	
								(-)	10,349	166,000	
		청년	소득 有	21,546	1,000	20,546	123,000	(+)	31,546	73,000	
			소득 無	20,349	1,000	19,349	117,000	(-)	11,546	173,000	
		35A 35B	청년	소득 有	28,728	1,000	27,728	165,000	(+)	42,728	95,000
				소득 無	27,132	1,000	26,132	156,000	(-)	14,728	235,000
	35A 35B	고령자	소득 有	27,132	1,000	26,132	156,000	(+)	40,132	90,000	
			소득 無	20,349	1,000	19,349	117,000	(-)	14,132	220,000	
	35A 35B	고령자		30,324	1,000	29,324	174,000	(+)	45,324	99,000	
								(-)	15,324	249,000	

- 1세대당 1단지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공급신청은 공급형(청약구분)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주택 발생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예비당첨 순서는 동호추첨 시 같이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 동일한 공급형(주택구분) 범위 내에서 일부 공급대상 주택이 남는 경우에는 다른 공급대상 계층 예비당첨자에게 시설의 변경 없이 최초 공급형 및 공급계층의 시설 상태로 우선공급을 진행합니다.
※ 남는 주택의 공급대상별 공급 순위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 청년/대학생
- 계약해지, 예비당첨자 계약포기 등으로 남는 주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주택은 금회 모집 대상자(예비자 포함)에 포함하여 공급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한 행복주택의 계약자 및 예비자가 금회 모집한 행복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기존 계약(자격, 권리)은 해지(소멸)되며 계약자인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위약금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행복주택 입주자는 아래의 입주자격 변경 등으로 허용되는 계약이 아니면 청약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거전용면적(소수이하 절사)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거전용 면적 외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면적 등의 변경은 임대조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 또는 재계약(갱신)자 또는 계층변경자는 임대차 계약(재계약)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동일한 임대조건 적용)과 조사된 입주자격(입주계층, 소득유무에 따른 할인대상 여부, 할증대상 여부)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대학생계층 및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계층인 입

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은 불가)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 및 새로운 임대조건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입주시점 등 별도 지정기간(별도안내)에 전환**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계약자는 계약해지)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체도 불가합니다.
- 금회 임대대상은 타 임차인이 이미 거주 및 퇴거한 주택이 포함되므로, 생활 흔적 및 에어컨 설치 자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동호의 변경이 불가하므로, 필히 감안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하고 **대학생 및 청년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인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사람은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우선공급 대상자가 미달되는 경우 미달된 물량 수를 일반공급 대상으로 추가하여 추첨하며 우선공급에서 추첨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 자가 우선공급 신청 시 부적격자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㉔와 ②~④)을 모두 갖춘자.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㉔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하였으나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 1인의 경우 120%, 2인의 경우 110%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5인	7,094,205원 이하	
6인	7,393,647원 이하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 5인 가구 소득기준액은 통계청 자료 월평균소득(7,009,271원)에도 불구하고 4인 가구 소득액(7,094,205원) 적용
- * 6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5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 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 또는 연접지역(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연천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2순위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사람.
3순위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표를 기준으로 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일반)	순위 → 추천

파주병원복합 **2-2. 청년(일반)**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①-⑦)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④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 ①-⑦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공고일 2021.5.31. 기준)
-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 1인의 경우 120%, 2인의 경우 110%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5인	7,094,205원 이하	
	6인	7,393,647원 이하	
세대원(본인)	본인소득만산정	3,589,957원 이하	120%

- * 5인 가구 소득기준액은 통계청 자료 월평균소득(7,009,271원)에도 불구하고 4인 가구 소득액(7,094,205원) 적용
- * 6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5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 납부예외자, 임의(계속) 가입자 등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미가입자 포함)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 청년계층은 소득 유(有)·무(無)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됨.
 - 단, 청약신청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 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③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

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 또는 연접지역(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연천군)이 거주지나 대학 소득근거지인 사람.
2순위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
3순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란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청년(일반)	순위 → 추첨

파주병원복합

2-3. 고령자(일반)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65세 이상**인 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 1인의 경우 120%, 2인의 경우 110%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5인	7,094,205원 이하	
6인	7,393,647원 이하	

* 5인 가구 소득기준액은 통계청 자료 월평균소득(7,009,271원)에도 불구하고 4인 가구 소득액(7,094,205원) 적용

* 6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5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고령자(일반)	추첨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동호지정 선계약 대상 추첨 계약 공급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p>[등기우편] 선계약 동호수 추첨 참여 신청 (입주자, 예비자)</p>	<p>6월 1일(화) ~ 6월 7일(월)</p>	<p align="center">- 2021.6.7.(월) 등기우편 소인(발송)까지 유효 -</p> <p>1) 우편 제출 서류 ① 공급신청서 (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③ 순위 서류(대학생/청년, 아래 택일 제출) - (거주지 증빙) 주민등록표등본 - (재학 대학 증빙) 재학증명서 등 - (소득근거지 증빙)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둘 다 제출 ※ 단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실제 거주지와 상이할 시 근로계약서 등 기타 증빙 서류 제출 가능</p> <p>2) 제출처: 파주병원복합 경기행복주택 관리사무소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90(상담전화: 02-589-4754) (접수가능 시간)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과 휴일은 제외</p>
<p>선계약 대상자 및 동·호수 전자추첨 결과게시 (당첨자, 예비자)</p>	<p>6월 18일(금) 17:00 이후</p>	<p>1) 전자추첨 실시 2) 추첨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gh.or.kr) <청약정보 -> 공지사항 에서 확인 3) 선계약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문자 및 전화로 별도 안내 예정</p>
<p>자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자, 예비자 모두 제출) 및 현장 선계약</p>	<p>6월 21일(월) ~ 6월 25일(금)</p>	<p align="center">- 2021.6.25.(금) 등기우편 소인(발송)까지 유효 -</p> <p align="center">※ 마감일까지 계약 미진행,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청약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안내 없이 계약이 취소됨</p> <p>[당첨자]</p> <p>1) (현장방문) 동·호수 추첨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방문하여, 선 계약서 작성 ※ 방문처: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90(파주병원복합 경기행복주택) 2) 계약금 100만 원 입금(입금계좌는 현장에서 안내하며, 현금수 납은 불가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안내 당일 17시 이전까지 이체 가 능하도록 사전준비) 3) 계약 진행과 같이 자격심사 서류 제출</p> <p>[예비입주자]</p> <p>1) (등기우편) 자격심사 서류 제출 2) 제출처: 파주병원복합 경기행복주택 관리사무소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90(상담전화: 02-589-4754) (접수가능 시간)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과 휴일은 제외</p>
<p>무주택·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조사</p>	<p>약3개월 소요</p>	<p>· 무주택·소득·자산 등 모집공고의 입주자격을 조사</p>
<p>자격 적격자 발표</p>	<p>별도안내</p>	<p>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및 신청시 제출 된 휴대폰 번호로 개별안내(수신 동의자)</p>
<p>입주안내</p>	<p>별도안내</p>	

■ 서류제출 주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일정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에 인원 몰림 방지를 위하여 서류제출 방법은 우편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편접수는 명시된 서류접수 마감일 까지 발송된 것을 유효한 접수로 인정합니다. (우편제출)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90 파주병원복합 임대관리센터(파주병원복합 관리사무소)
- 준비서류는 아래 「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선계약 등호수 추첨 신청 안내

- ※ 2021. 6. 7.(월) 등기우편 소인(발송)까지 유효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 순위 관련 증빙서류 발급 시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만 나오게 발급

■ 추첨 신청 서류

제출서류	내용	비고
공급신청서 [붙임1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전체 	1통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전체 • 작성대상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세대원 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작성,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및 해당세대 모두작성 * 예비신혼부부 계층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로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 사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장자 서명 또는 날인(올림 서명 불가)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서식)
순위 증빙 서류 (해당자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택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지로 신청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2) 거주지가 아닌 재학중인 대학교로 신청한 자(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3)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1) 재직증명서와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1통

5. 현장 선계약 및 자격 심사 안내(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학생/청년 계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시 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선계약 대상자는 **계약서류와 자격심사서류**를 다 제출하여야하며, 예비당첨자(입주자)는 **자격심사서류**만 제출합니다.
- ※ 선계약 대상자는 **현장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며, 예비당첨자(입주자)는 **우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 **2021.6.25.(금) 등기우편 소인(발송)**까지 유효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정자로 서명(홀름서명 금지) 또는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현장 선계약 안내(선계약 동호지점 당첨자)

- 계약금 입금계좌 : 농협 301-7541-7541-81 (예금주) 경기주택도시공사
 - * 계약금은 계약자 본인 명의로 입금후 입금 확인증을 계약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계약장소 : 파주병원복합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 [가능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12:00~13:00)과 휴일은 제외]
 -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90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상담전화 : 02-589-4754)
- 계약방법 : 계약금(100만원) 입금 ⇨ 선 계약체결[당일완료]
 - * 방문계약자는 신청서류 및 자격심사서류를 준비하여 선착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증 (입금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차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붙임7 서식] ※ 동의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확약서(선계약 후 검증 관련) [붙임5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는 “공통서류”와 신분증, 계약자와 관계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 • 위임장(붙임6 서식에 계약자 인감날인) • 대리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차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 자필서명 방식으로 위임장 작성자는 계약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예비 당첨자에 관한 사항]

- 입주자격 검증을 거친 후 계약해지, 퇴거, 공급대상 변경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때 순번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검증 후 확정된 입주자격의 임대조건으로 입주 전 계약변경)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휴대폰 문자와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 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 서류 안내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모두 제출)

1) 공통서류

제출서류	내용	비고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붙임3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세대원 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작성,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및 해당세대 모두작성 * 예비신혼부부 계층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로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홀림 서명 불가)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4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 확인원 ※ 출자금/출자지분/비상장주식 : 관련 입증서류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당첨 및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에 표시하여 정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 주거급여수급자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 제외 	1통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의 경우 대표신청자,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 제출 	1통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 입주전까지 사본 제출 가능 	1통
<p>□ 기타 필수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외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붙임6 서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 생 계 층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붙임8 서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신청자 작성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청 년 계 층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 	국민연금공단

	<p>서 추가 제출</p> <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p>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p>[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p> <p>·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p> <p>※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p> <p>※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p> <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p>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p>[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p> <p>·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p> <p>·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p> <p>※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p> <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p>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p>[예술인]</p> <p>·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p> <p>·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p> <p>※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p> <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p>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p>[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p> <p>-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p> <p>-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p> <p>[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p> <p>-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p> <p>[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p> <p>-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p> <p>※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p>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p>[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p> <p>-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p> <p>-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p> <p>[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p> <p>-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p> <p>[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p> <p>-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p> <p>※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p>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재청약자	<p>·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p> <p>- 병적증명서</p> <p>-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p> <p>-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p>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6.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

■ 입주자격 검증

- 경기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별 해당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여부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건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지는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총자산가액은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지축: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 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축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급여,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6조 3호) : 「공간정보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 한부모가족</td> <td>(자녀無) 6년 (자녀有) 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無) 6년 (자녀有)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無) 6년 (자녀有)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 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공고일 기준 3,496만 								

	<p>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동차를 공유(지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 (전체를 산출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학생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 불허)</p>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준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기간 갱신시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자산·자동차기준 초과자는 퇴거하여야 하며, 소득 기준 초과자는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계약안내	<p>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이자 지급 없이 약 10일 전후 지급)</p>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단지 유의사항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로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동 옥상 등에 설치될 수 있음
- 인근학교 학생배치는 금향초등학교, 금릉중학교(금릉중, 금촌중), 금촌중학교(문산중, 파주광일중)임
- 파주병원복합 경기행복주택은 총 50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파주병원 인근 부설주차장)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임
- 북측으로는 12미터 도로, 동측으로는 8미터 도로와 연결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상1층~지하3층에 설치된 파주병원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인한 소음 등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행복주택 주차대수는 총20대(일반형 18대, 경형 1대, 장애인전용 1대)주차로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 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행복주택 차량 출입 및 주차장 위치는 북측 12M 도로에서 진입하고 지상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주병원 인근 부설 주차장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파주병원 인근 부설 주차장 차량 출입 및 주차장 위치는 동측 8M 도로에서 진입하고 지상1층~지하3층에 위치하고 있음
- 행복주택 동측으로 파주병원과 장례식장이 위치하고 있으니 신중히 고려하여 청약하시기 바람에 이에 대하여 시설개선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후 시설물 개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소방 활동을 위하여 지상주차장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파주병원복합 경기행복주택은 소규모 세대수로서 관리직원 및 미화직원 등이 비상주로 관리되는 단지임

-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은 특정 요일에 정한 시기에 버려야하며 입주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함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에 따라 1층 펠로티 주차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정된 주거용 쓰레기분리수거장만 이용할 수 있음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지상2층 주방/식당(음식제공 등은 없음), 지상6층 세미나실, 취미실, 다목적실, U-HEALTH 실 등이 있으며, 시설로 인하여 인근 세대에 소음, 사생활 침해가 일부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프로그램 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임
- 계단실,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의 그릴창 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함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및 급탕유량계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 발코니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소음이 날수 있음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 하여 이사집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함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절기 복도 창문 개방으로 인하여 복도 내 소화배관 동파가 우려됨에 따라 혹한 또는 기온 급강하시에는 창문을 필히 닫아야함.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26㎡형은 에어컨실외기가 발코니에 위치하고 있어 에어컨 가동 시 발코니 실내 온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26㎡형의 실외기 그릴 개방은 에어컨 가동시에만 개방하시기 바랍니다.(동절기 개방 시 수전 등 동파 우려)
- 각 층 복도 등 공용공간에는 개인 물품을 적치할 수 없으며, 장기간 적치 시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처분에 따라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35B㎡형(4세대)은 주거약자 세대로서 욕실문이 행거형태로 설치되며, 욕실 내에 손잡이 등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주방용 환기덕트가 세대 내 천정 속에 설치되어 주방후드 가동시 진동,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여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기계실, 방재실은 파주병원 인근 부설주차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며 일부 전기실 근접 세대는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지상 일부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냄새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주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음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예정임
- 홍보관,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함
- 붙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빌트인 가구류는 시설변경 없이 건설된 현시설 상태로 공급하며,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유형별 예상 관리비

단지구분	공급형		공급대상	주거 전용(㎡)	예상 관리비
	주택 구분	공급 구분			
파주병원복합	26A	26A	대학생	26.79	약 35,000원/월
		26A1	청년		
	35A	35A1B1	청년	35.23	약 45,000원/월
	35B			35.02	약 45,000원/월
	35A	35AB	고령자	35.23	약 45,000원/월
	35B			35.02	약 45,000원/월

※ 상기 예상 관리비는 계절, 개인별 수도/전기 이용량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변동이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9. 위치안내

구분	위 치
<p>현장 선계약 접수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간 : '21.05.31.~ 일정종료시 [10:00~17:00] [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상담전화 : 02)589-4754 <p>파주병원 행복주택 임대관리센터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90] (추첨 신청 서류 / 자격심사 서류 제출)</p>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임대문의	02-589-4754
------	-------------

2021. 05. 31.

